

제3장 논문심사 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르며, 단신(Notes, Communication, Letter 등)이나 총설(Review)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2.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장이 논문형식 및 체제 등과 관련한 1차 심사를 마친 후, 이를 통과한 논문만 심사를 의뢰한다. 단,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하여 재투고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위촉하고 그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심사결과는 “Accept(게재가)”, “Minor correction(수정 후 편집위원 확인)”, “Major correction(수정 후 심사위원 확인)”, “Reject(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아래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 (1) “Accept(게재가)”는 논문의 내용이 우수하고 형식도 투고규정을 만족하고 있어 사실상 저자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 (2) “Minor correction(수정 후 편집위원 확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사소하여 저자의 수정이나 보완내용을 심사자가 재확인할 필요 없이 편집위원이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 사항 등에 해당한다.
 - 가. 단순한 오타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나. 단순한 편집상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다. 그림이나 표 등의 가독성이 높이기 위한 사소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라. 논문의 내용과는 무관한 기타 사항의 사소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 (3) “Major correction(수정 후 심사위원 확인)”은 논문의 내용이나 전개 또는 형식 등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지적되어 저자로부터의 보완 및 수정사항을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가. 논문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나. 실험의 전개방법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 다.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전달력이 부족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라. 새로운 이론이나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논리전개가 부족한 경우
 - 마. 영문초록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영어표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논문의 형식이나 가독성, 그리고 편집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아. 기타 투고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심사자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Reject(게재불가)”는 논문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전면적인 재작성 없이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 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독창성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기존의 내용이나 이론을 단순히 종합 서술한 경우(“총설/Review”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 논문의 형식이나 편집수준이 너무 부실하여 논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영어논문의 경우 영어표현의 수준이 너무 낮아 전면적인 재작성이 없이는 연구결과의 전달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 기타의 사항 등으로 인해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심사위원 3명의 판정결과를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의 판정 또는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비고
accept	accept	accept	accept	-
accept	accept	minor	minor	-
accept	accept	major	major	-
accept	accept	reject	major	편집위원장*
accept	minor	minor	minor	-
accept	minor	major	major	-
accept	minor	reject	major	편집위원장*
accept	major	major	major	-
accept	major	reject	major	-
accept	reject	reject	reject	-
minor	minor	minor	minor	-
minor	minor	major	major	-
minor	minor	reject	major	편집위원장*
minor	major	major	major	-
minor	major	reject	major	-
minor	reject	reject	reject	-
major	major	major	major	-
major	major	reject	major	-
major	reject	reject	reject	-
reject	reject	reject	reject	-

*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최종판정하거나 제4의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후 15일 이내에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기한 내에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7일간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나 특별한 요청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1차 심사기한 또는 연장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을 해지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심사내용과 수정사항 등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9. 심사의견이 저자에게 통보된 후 3개월 이내에 저자로부터의 수정본 제출이나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다만, 저자로부터 수정본 제출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저자와 연장기한을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최장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10. 본 학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의 경우 심사완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가 게재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1.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편집위원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